

## 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 2022년 11월 25일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소음진동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시행세칙 제6장 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기능) ① 각 위원회는 학회의 정관과 시행세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학회의 정관과 시행세칙에 따른 사업을 학회 본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 제 3 조 (구성) ① 학회 시행세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위원회 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임원 변경 시에는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 4 조 (회원) ① 각 위원회의 회원은 학회 회원(당해 연도 회비 납부자)을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② 모집한 회원에 대한 회원명부를 관리하고, 12월 말까지 회원명부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5 조 (사업) ① 각 위원회는 학회 시행세칙 제2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그 결과 (활동실적)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차년도 사업 계획은 10월 이사회 전까지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6 조 (운영) ① 각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과 결산을 실행하여야 하며, 결산서는 매년 12월 이사회 전까지 학회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회 본부에서는 일정기간 각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매년 100만원씩 지원하며, 지원 기간의 연장 및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학회 본부에서는 각 위원회의 원활한 학술행사 개최를 목적으로 장소사용료, 강연료, 인쇄료 등 학술행사 소요경비의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각 위원회는 학회 본부 지원금에 대해서 연말에 반납하여 하며, 사업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원금 잔액을 반납한다. ⑤ 각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학술행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학회 본부 (사무국) 사무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 7 조 (회계) ① 각 위원회는 개최 행사의 참가등록회비 산정을 행사성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회원과 비회원은 차등을 두어야 한다. ② 학회 본부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계좌통장,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계좌통장은 학회 본부 (사무국)에서 관리하며, 체크카드는 각 위원회장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6조 ③항의 학회 본부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결산 시 학회 본부로 회수될 수 있도록 결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회 본부 (사무국)에서는 각 위원회의 계좌통장 관리와 학술행사 개최에 따른 등록회비 등의 수입과 운영에 따른 지출 관리를 지원한다.
- 제 8 조 (배분) ① 각 위원회의 당해연도 활동으로 발생한 사업이익금(결산서 기준)의 70%는 해당 위원회에 재배정하고, 30%는 학회 본부로 귀속한다.
- 제 9 조 (인센티브) 학회 본부는 ① 특별회원(사)을 유치할 경우 입금된 회비금액의 일정금액, ② 학회 본부 학술행사 및 발간물에 후원/협찬사(전시, 광고 포함)를 유치하는 경우 그 실비를 제외한 금액, ③ 기타 이사회에서 위원회로 인정되는 수익에 대해서 위원회 활동비로 지원한다.
- 제 10 조 (정산) 각 위원회의 세부 정산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활동비 정산에 관한 지침(2018년 5월 이사회 제정)”을 따른다.

## 부 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 정관 및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각종 위원회 활동비 정산에 관한 지침

제정 : 2018년 5월 25일  
개정 : 2022년 11월 25일

본 지침은 한국소음진동공학회 각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위원회 활동(운영)비에 대해서 정산 절차의 최소화를 원칙으로 그 정산 요령을 담고 있다.

#### 1. 위원회 수익

- 가. 위원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학회 본부로 부터 제공된 활동비(최초 100만원 : 2018년 3월, 위원회별 개별 통장 발행).
- 나. 학회 특별회원을 유치하여 학회 본부로 부터 회비금액에서 인센티브로 할당된 수익.
  - 가입 (첫해)1년차 50%, 2년차 40%, 3년차 30%, 4년차 20%, 5년차 10%를 유치한 해당 위원회에 인센티브로 할당.
- 다. 후원/협찬사를 유치하여(전시, 광고 포함) 학회 본부로 부터 그 실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수익.
- 라. 학술행사 등을 통한 등록회비 수익.
- 마. 기타 학회 이사회를 통해 인정되는 수익.

#### 2. 경비의 사용은 위원회별로 제공되는 법인(체크)카드를 사용.(기타 불가사항 발생 시 학회 사무국에 협조 요청)

#### 3. 세무 및 회계 관련

- 가. 경비사용 시 제공되는 “활동비 집행내역서”양식을 작성 후 보관.
- 나. “가”항의 양식과 추가로 제공되는 결산서 양식은 작성하여 12월 이사회 전까지 일괄 제출.
- 다. 결산서의 사업이익금(당기순이익)은 수입총액에 지출과 전년도 이월금을 제함.
- 라. 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④항에 따라 학회 본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학회 본부로 반납될 수 있도록 결산서에 반영.

#### 4. 문서보관

- 가. 회의 또는 간담회 등 위원회가 소집된 경우(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 제공되는 “회의록”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
- 나. 회의록은 회의 개최 후 2주 이내 학회 사무국으로 제출.

#### 5. 위원회 통합 또는 폐지

- 가. 위원회가 통합되는 경우 해당 위원회와 활동비(운영수익 포함) 통합을 원칙.

나. 위원회가 폐지되는 경우 학회 본부(사무국)로 활동비(운영수익 포함) 반환을 원칙.

6. 기타

가. 위원회는 운영비(활동비) 정산과 운영을 위해 학회 사무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 이 지침서는 2018년 2월 23일 부터 적용한다.

■ 첨부 : 활동비 정산서식(활동비 집행내역서, 회의록, 결산서)